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보훈가족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협력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환경, 인권, 윤리,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력사는 공단의 법규 요구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사항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공단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 기준]

-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친환경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기준]

- 협력사는 사업권 내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규정된 근로 일수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

- 협력사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작업 절차 준수 및 지속적인 안전훈련 등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 기준]

- 협력사는 기업 운영 활동에 있어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업체 및 인력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관계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소속 직원에게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과정에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이버민원실(www.bohun.or.kr)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내부고발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업무와 관련된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협력사: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